			-
	△도하에이하하이치드에 관하버르 개저이으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5601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에	1. "중권관련집단소송"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	- Poli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부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	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	
	자격을 제한하되, 시험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2. "총원"이라 함은 유가중권의 때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얘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관	
	〈빅제치 세공〉	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屯
26		3."구성원"이라 함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대통령 노무 현인	4. "대표당사자"라 함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증권관	н
	2004년 1 월20일	련집단소송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
	국무총리 고 건		
	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 ^강 금실	5. "제외신고"라 함은 구성원이 중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法律 第7074號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	20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다.	2004. 1.
	제1장 총 칙	6."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	.20. (Ī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가중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	증권을 말한다.	(호요년)
	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제3조(적용범위) ①중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한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	
1. 증권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게가 충돌되는 자는 증권관련집	제]15601호
2. 중권거래법 제1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601 रू
및 분기보고서에 준용되는 동법 제I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3. 중권거래법 제188조의3 또는 제18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청구 4. 증권거래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 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 ①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 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등인지법	관
야 한다. 제4조(관할)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애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원으 로 한다.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 ③증권관련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2004. 1.20.
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유가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유가증	④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화요인
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실을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	

	(이하"중권거래소"라 한다) 또는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리인의 경력	
	립된 한국중권업협회(이하"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	6.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제15
	여야 하며,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7.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제15601호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송허가신청서	1.1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1. 당해 중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시에 따라 당해 중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취득하지	
	2. 원고측 소송대리인	아니하였다는 사실	屯
	3. 피고	2.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중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1
28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③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	
	5. 총원의 범위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ŀπ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소송허가신청서에는	1. 최근 3년간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중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제10조(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법원은 제7조의 규정	2(
	2. 원고측 소송대리인	에 의한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	004.1
	3. 피고	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0. (
	4. 총원의 범위	1. 중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호· 오· (호)
	5. 제7조쟤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	U CI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어야 한다.	601 <u>ē</u>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②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	
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고 적절히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	③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중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	
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제9조제2항의 문서를 첨	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중권관련집단소송의	
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반사정	虍
④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7	에 비추어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	제12조(소송허가요건) ①중권관련집단소송사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μщ
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결정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로 이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	200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7조제1항의	중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4. 1.2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2. 제3조제1항 각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	0. (화요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윤 일)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대표당사자는 구성원중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원은 관계법원이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	제15
홈결이 없을 것	을 정한다.	.5601호
②중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	
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허가절차) ①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신청의 이유를 소명하	④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제10조제1항제4호의	
②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7조제1항의 규정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들의 의견	屯
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의	⑤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	제15조(소송허가결정) ①법원은 제3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적	 ≖
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합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중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	
제14조(소송허가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①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004.
수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u>⊢</u> `
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2. 원고측 소송대리인	.20. (호
②동일한 분쟁에 관한 수개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	3. 피고	(탈요년)
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	4. 총원의 범위	
		-

			٦
	5. 주문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6. 이유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제 15
	7.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제 15601호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3. 피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예납에 관한 사항	4. 총원의 범위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③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宝
	④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1
31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법원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허가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결정을 하는 때에는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중에	h
	명하여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제17조(소송불허가결정) ①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11.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권관련집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2004.1.:
	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20. (호
	제18조(소송허가결정의 고지) ①법원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호요년
	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성원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_
제19조(소송허가결정의 통보) ①법원은 제1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	제23조(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	제24조(대표당사자의 결원) ①대표당사자의 전부가 사망 또는 사임하	601호
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거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	
제20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송절차는 중단된다.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대표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구성원은 제21조의 규정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①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臣
②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21조·제23조 또는 제24조의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구	ŀπ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 ①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	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	
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	2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	2004. 1
②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②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	L.20. (;
다.	송대리인을 해임·추가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화요일)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	
	 관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 회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①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 ①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 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관계 해도 다 다 한 가 한 가 한 다 하 한 다 한 가 한 가 한 가 한 가 한 가 한 가 한 가 한 가 한 가

	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
	④제3항의 경우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반아 소송대리인을 선	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기간	제15
	입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15601호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③증권관련집단소송의 피고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없는 때에는 그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	7조(총원의 범위의 변경 등)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	④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	
	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屯
	③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이	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월 이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 결정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구성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함께 고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ŀ≖
	지하여야 한다.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외신고를 한 경우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소송절차	2004.
제	28조(제외신고) ①구성원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제30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04. 1.2
	의하여 고지한 제외신고기간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0. (화요
	수 있다.	제31조(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u> </u>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증권관련집	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	

ယ္သ

		_
제32조(문서제출명령 등)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	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과 관련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제35조(소취하・화해 또는 청구포기의 제한) ①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	제15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제1560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성원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1항	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각호의 사유가 있는 문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虍
2.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	규정을 준용한다.	
③대표당사자와 피고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④중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을 적용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한다.	ŀπ
제33조(중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제36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0
재34조(손해배상액의 산정) ①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2. 총원의 범위	2004.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1.20. (Ī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거나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	②법원은 금전지급의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참작하	(호유석)
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	여 지급의 유예와 분할지급 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	

	락할 수 있다.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	②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	제15
	다.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세15601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③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	
	규정을 준용한다.	하여야 한다.	
	제37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	제4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①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8조(상소취하・상소권포기의 제한) ①제35조의 규정은 상소의 취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관리인(이하"분배관리인"이라 한다)은	臣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한	
1	②대표당사자가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기간	다.	
	이 만료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	③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łщ
	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	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①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	20
	제4장 분배절차	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20.
	제39조(분배법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계획안(이하"분배계획안"이라 한다)에	20. (호] -
	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है छ कि
	제40조(권리실행) ①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1. 총원의 범위와 체권의 총액	

ω 5

Л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항목과 그 금액	③법원은 분배관리인·대표당사자 또는 구성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에 소송의 진행과정·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제1항제1호의	5601호
	5. 권리신고의 기간・장소 및 방법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대표당사	
	6. 권리확인방법	자의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7. 분배금의 수령기간·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④제3항의 신청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계획안의 인가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3조(분배의 기준 등) ①분배의 기준은 판결이유중의 판단이나 화해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조서 또는 인낙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한다.	제45조(비용지급에 부족한 경우) ①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	咔
36	②권리신고기간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분배하지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한다.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Нш
	제44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①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	'
	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 각호의 비용에 분배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하여야 한다.	
	2. 권리실행비용	'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2004.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액	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4. 1.20.
	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②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	0. (호]
	②분배관리인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계획의 인가를 받	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	(호구 연])
	기 전에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야 한다.	

③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 대하여 권리확인의 결	제156
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쉐15601호
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	
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울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中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51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후 잔여	
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ŀ≖
제52조(분배보고서) ①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후 분배보	
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	2004.
여야 한다.	4. 1.20.
1.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주소 및 신고금액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탈요년)
3.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 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51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후 잔여 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52조(분배보고서) ①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후 분배보 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1.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주소 및 신고금액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_
4. 잔여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③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56조 본문의 규	경과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15
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01호
제53조(수령기간 경과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제57조(금전외의 물건의 분배) ①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외의 물	
수령기간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 경과후에	건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금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 경과후 6월 이내	전에 준하여 분배한다.	
에 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분배관리인온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①분배관리인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	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가하여 분배할 수 있다.	臣
의 출급청구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	제58조(추가분배)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	· ·
를 제출하여야 한다.	된 후에 새로이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종료보고서에는 수령기간 경과후에 분배	는 제39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ŀ≖
금을 분배받은 자의 성명·주소 및 분배금액, 분배금의 지급총액,	제5장 시행규칙	
잔여금의 처분, 분배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③제52조제3항의 규정은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으로 정한다.	20
제55조(잔여금의 처분) 법원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종료보	제6장 벌 칙	2004.1.
고서가 제출된 경우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의 출급	제6장 벌 칙	.20. (화
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60조(배임수재 등) ①중권관련집단소송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Fo
제56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의 직무상 행위	여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	

ယ 8

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제산상의	수 있다.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61조(배임증재 등) ①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제15
처벌한다.	여 소룰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	제15601호
1.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장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제62조(몰수・추징) 제60조 및 제6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屯
있다.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하되, 이	
이 소소해서 이러마이 파마이 페세트 7년 사람이 지어 따뜻 1여이 하	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Г Г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	L LT
아커 털금에 제안다.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1. 제9조제1항제4호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첨부한 자	2004.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또는	4. 1.20.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제1향	문서송부촉탁을 거부한 자	
의 형과 같다.	부 최	(탈요년)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	◇주요내용	
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 · 가.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	× 15
③(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을 기준	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	<u>र</u> 1090
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중권거래법 제2	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함(법 제2조제1호).	
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로	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제, 미공개정보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행하여진	의 이용, 시세조작 그리고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함(법 제3조제1항).	۲ţ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이유	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	
중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허위공	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	ŀ
 시·주가조작·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	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소를	
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의 소송구조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2항).	
로는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	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	20
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	의를 채택함(법 제5조제1항).	2004.1.
려가 있는 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액투자자들	마.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20. (2
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등 표 년)
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_		_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		자. 대표당사자외의 구성원에게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의한 확정관	
	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22		결의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5601
	조),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도록 함(법 제28조 및 제37조).	01호
H]	.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차.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1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도록 함(법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법 제11조제3항).		제35조 및 제38조).	
시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	i	카.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中
	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함(법 제41조제1항 및	
	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제2항).	H ال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법 제12조제1항).	į	타.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0	.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		하고, 구성원이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2
	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		함(법 제49조).	004.1
	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		파.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	.20. (;
	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함(법 제18조제2항・제3항, 제27조제4		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6 땅 년)
	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	
L				

			-
	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	
	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	. 5601호
	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을	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	- Ioi
	기준으로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		
	에 대해서는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법 부칙 제1항 및	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항). 〈법세처 제공〉	부 칙	屯
42	 국회에서 의결된 국적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 노무 현인	②(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ŀπ
	2004년 1 월20일	이 법 시행전까지의 사이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	'
	국무총리 고 건	된다.	
	국 무 위 원 강 금 실 법무부장관	◇국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法律 第7075號		2004.
	國籍法中改正法律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법에 의한 간이귀화요건	. 1.20.
	國籍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제6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가 사망·실	(탈윤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	종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